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7월 일

발의자 : 오지연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조례의 용어와 인용 범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- 나.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조항에서 의원 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정비하고, 관련 용어 정의는 해당 용어가 처음 사용되는 조항으로 이동하여 체계를 명확히 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시 준용하는 규정을 현행화하고 구체화함 (안 제9조)
 - (월정수당 등) '공무원 수당규정' →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 명확화
 - (여비) '공무원 여비규정' → 「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로 구체화하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.

3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: 해당없음

5. 신·구조문 대비표: 덧붙임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,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의원”을 “하남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한다)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,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「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(이하 “의회“라 한다)의원(이하 “의원“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,</p> <p>제2조(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) ① <u>의회의원</u>에게는 일상적인 직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. ②·③ (생략)</p> <p>제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수당규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·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,</p> <p>제2조(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) ① <u>하남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고,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「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